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,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을 지원·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3조(지원시설의 설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4조(관리·운영) 시장은 지원시설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서울산업지원센터 2.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3.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4.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5. 서울애니메이션센터 6. 서울패션디자인센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1조,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6조(사용허가 등) ①지원시설의 일부 또는</p>	<p>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(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)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7조(운영위원회) ①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지원시설의 사용허가·취소 등에 관한 사항 4. 기타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하여 관리·운영중인 중소기업지원 관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보며, 그 관리·운영의 위탁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·운영이 위탁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3조(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중인 자로 본다.</p> <p>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공공시</p>
--	---

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별표중 산업경제국(산업정책과)란과 산업경제국(중소기업과)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
 ②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
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별표중 산업경제국(산업정책과)란과 산업경제국(중소기업과)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

[별 표]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·위치 및
 기능(제3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기 능
서울산업지원센터	강서구 등촌동647-26	중소기업종합지원
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	강서구 등촌동647-26	중소기업창업보육
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	송파구 잠실1동 10	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
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	도봉구 창동1-10	중소기업제품전시홍보
서울애니메이션센터	중구 예장동 8-145의 1	애니메이션산업 육성·지원
서울패션디자인센터	중구 을지로5가 40-3	패션산업 육성·지원

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
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
 번호 604

2000. 7.
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8일,
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(2000. 7. 5)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(환경관리실장 김승규)

- 가. 제안이유
 -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도입자와 버스에 연료(천연가스)를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.
 -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도입자 즉, 버스업체가 전반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버스보다 비싼 천연가스

버스 도입시 현재의 융자금 지원만으로는 초기부담이 커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버스 구입시의 초기부담을 해소하고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을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도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융자금 지원 이외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남중)
 (총괄부문)

- 본 개정조례안은 '99. 4. 15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.

(세부사항)

- '99. 5. 10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및 충전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해 "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조례" 제정 당시에는 모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융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'99. 4. 15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6조의2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·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 1조에 융자금 지원외에 보조금도